



## 서울중앙지방법원

### 판 결

사 건 2025가단102360 손해배상(저)  
원 고 주식회사 A  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 
피 고 B  
변 론 종 결 2025. 9. 19.  
판 결 선 고 2025. 11. 7.

#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. 3. 12.부터 2025. 11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8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

## 이 유

### 1. 기초 사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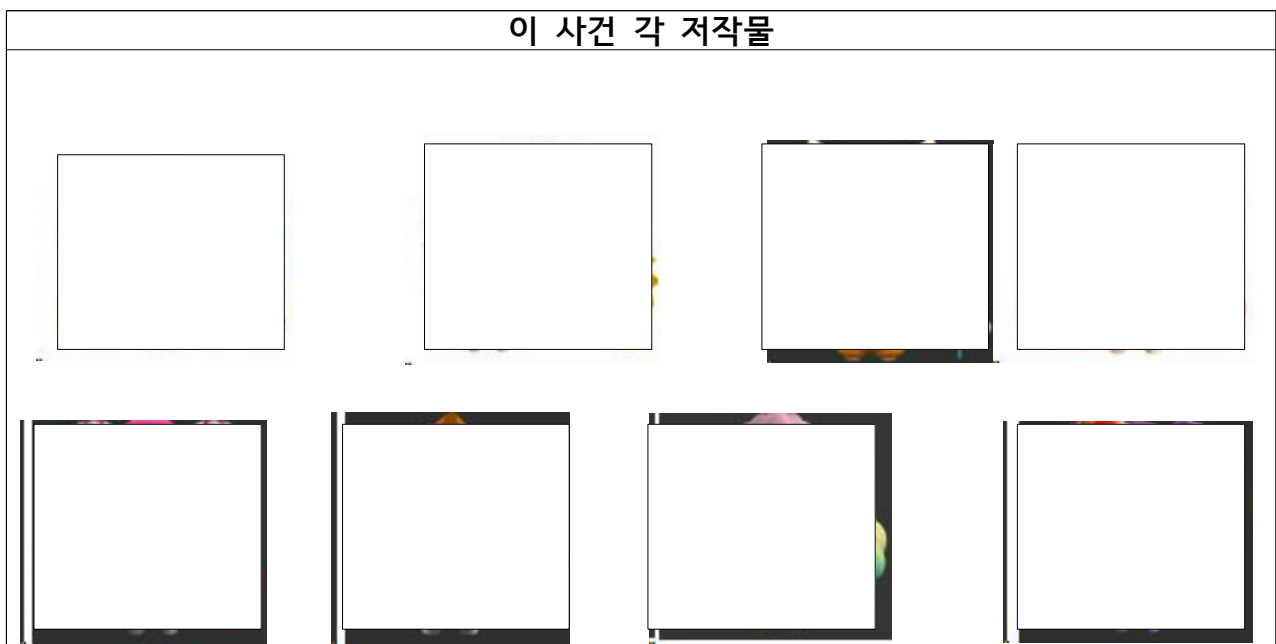
#### 가. 당사자의 지위

1) 원고는 만화영화 제작업, 완구(캐릭터 인형 등)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.

2) 피고는 'C', 'D'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(이하 '피고 매장'이라 한다)을 운영하고 있다.

#### 나. 원고의 'E' 제작 및 방영

원고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'E'(이하 '이 사건 애니메이션'이라 한다)은 2020. 3. 경부터 2021. 4.경까지 F에서 방영되었는데,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미지로 아래와 같은 "G", "H", "I", "J", "K", "L", "M", "N"(이하 '이 사건 각 저작물'이라 한다)등을 제작하였다.





#### 다. 피고의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 행위

피고는 2021. 11. 28.경부터 2024. 8. 1.경까지 피고 매장에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복제 이미지를 포함한 의류 등(이하 통칭하여 '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'이라 한다)을 전시·공중송신·판매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, 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피고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전시·공중송신·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,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(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).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도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#### 3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4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,000만 원(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,000만 원)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(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),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



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(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, 제4항).

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1,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은 8개인 점, ②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은 2021. 11. 28.경부터 2024. 8. 1.경까지로 2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지속된 점, ③ 피고는 위 ②항 기재 기간 중 2개의 상호로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다른 소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바, 그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의 유포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피고는 서울 중구 O시장에 위치한 매장 뿐만 아니라 'P'이라는 온라인쇼핑몰과 독립몰,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각 캐릭터 당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큰 점, ⑤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고 상품을 매수한 주요 소매업자 또는 그 상호에 해당하는 'Q', 'R', 'S', 'T', 'U'가 2022. 11.경부터 2024. 6.경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금액 합계가 50,571,500원에 이르고, 그중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,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, 피고의 행위태양 및 이 사건에 드러난 주관적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, 손해액을 8,000,000원 (= 1,000,000원 × 이 사건 각 저작물 8개)으로 인정한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5. 3. 1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. 11. 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



가 있다.

#### 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     김지영